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371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3710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단15692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C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 선고 2021. 6. 24.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단1569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B"을 "B"으로, "피고 C"을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판결채권 및 이 사건 대출에 기한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85,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147,000,000원(= 120,000,000원 + 27,000,000원)이므로, B의 상속지분(2/9)에 해당하는 가액은 8,444,444원{= (185,000,000원 - 147,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인데, B은 울산 남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망인으로부터 2014. 2. 7.부터 2014. 2. 13.까지 합계 29,000,000원을 증여받아 B이 사전증여 받은 위 돈이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2/9)에 해당하는 가액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부가 장기간 같은 집에서 함께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위 집에 대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악의라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이 2014. 2. 7.부터 2014. 2. 13.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금원이 생전에 증여된 재산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와 B이 모자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악의에 관한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3.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천석

판사김영환

판사조진용

별지